

제 97회 KAI Forum : IFRS 전면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검토와 영향분석

발표자: 김경호(홍익대학교) - IFRS 도입에 따른 법적관계의 검토:

-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회계기준은 단순한구조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전반적으로 재정비되는 것이 필요할 것임.
-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,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은 국제적 정합성이 없으므로, 기업회계기준 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- 감독기구 또는 기준제정기구에 의한 실무지침, 질의회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.
- 기업회계기준은 법규의 성격이 아닌 GAAP의 성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.

발표자: 정영기(홍익대학교)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법에 대한 검토:

- 현행 상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제개정이 어려워 진부화된 규정이 많음(예: 이연자산).
- 개정 상법 시안에서는 배당가능이익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회계원칙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으나,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법인을 자산규모와 연결시키는 등 여전히 현 기업회계기준 및 IFRS와 상치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음.
- IFRS 적용을 어떤 법에서 규정할 지의 법적 위치의 결정 문제도 존재함.
- 상법개정시안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맞춰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나, 자산, 부채의 평가규정, 기본재무제표의 범위(IFRS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요구되지 않음)와 잉여금 처분의 문제 등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.
- 상장회사, 금융사, 비상장회사, 중소기업 등에 대한 IFRS 또는 IFRS for SME의 적용결정의 문제, 규제 법률의 결정문제도 검토가 필요함.

발표자: 이영한(서울시립대학교)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 및 증권거래법에 대한 검토:

- 현행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자산, 부채, 손익항목의 준용규정 및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, 결산조정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상장/비상장기업이 이원화 될 경우 기업간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것임.
- 세법과 국제회계기준의 괴리로 과세소득과의 조정항목의 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세법의 적용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, 이러한 재무제표가 IFRS 상의 별도재무제표가 되어야 할 것인지, 기존의 개별재무제표가 되어야 할 것인지의 결정 문제도 있음.
-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에 따른 감사인, 경영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함.
- 지배회사는 연결 종속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.
- 외감법, 증권거래법에서의 공시 요구사항 등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이하므로, 이에 대한 탄력적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
- 2009년 시행될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도 고려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발표자: 김경태(서울시립대학교) - IFRS 번역에 수반되는 문제의 검토:

- 영어가 자국어가 아닌 경우, **IFRS**의 도입 시 번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**IFRS**의 **equivalence**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**IASB**와 **IFAC**(국제회계사연맹)에서 정한 번역절차를 토대로 우리의 번역과정을 문서화하고 **Due process**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.
- 원문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영어의 병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. 원문과 번역본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지의 법적 문제와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**IFRS**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임. 뿐만 아니라, 번역본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겪는 실무적 어려움과 그간의 회계관행을 고려할 때 실무지침서 또는 해석지침서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.

토론자: 이갑재(삼일회계법인 상무)

- **IFRS** 도입은 회계기준 관정보다 자본시장 운영체계 관점에서 접근하여 상법, 증권거래법 등 모든 관련법규가 검토되어야 함.
-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로 모회사의 연결범위 결정 및 공시책임 여파가 크며, 기본적으로는 그룹사의 지분소유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임.
- **IFRS**의 도입 이전의 공시절차에 대한 법규정의 조속한 마련
- 상장기업의 재무 **infra** 정비
- **IFRS**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프라구축 노력
- 국내에서 개별 건별 질의회신은 지양하고, 필요시에는 실무지침 또는 해석서 방식
- 관련 부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원의 서한 발송 등 노력 필요

토론자: 김태식(한국공인회계사회)

- **IFRS**에 대한 질의회신은 지양하고 전문가 **round table**과 같은 시스템을 통한 의견조율 절차가 필요함.
- 개별기업의 회계처리 사안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음
- **IFRS**는 법규보다는 **GAAP**으로 받아들여야 함

토론자: 김경률(금융감독위원회)

-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검토중임에 반영하는 방안 고려 중
-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음
- 개별재무제표의 작성 및 의무화 여부를 검토중임
- 연결범위에 대해서는 **IFRS**의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 검토 중
- 사업보고서 등에 연결기준 공시항목의 결정에 대해 검토 중
-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정보요구권 검토 중
- 감사인의 독립성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를 연결실체로 판단하는 방안 검토 중
- 영문 병기는 어려움이 있음